

# HIV/AIDS (에이즈) 차별

## 고발 방법

본인이 HIV 양성 판정자라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뉴욕주 인권 분과(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양식은 반드시 해당 차별 행동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분과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면담 약속을 하시려면, 본인 거주지 또는 고용지에서 가까운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본 분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dhr.state.ny.us](http://www.dhr.state.ny.us)

예:

당신이 처음으로 새 치과 의사를 찾아가겠다고 가정해 봅시다. 치료하기 전에, 당신은 본인이 HIV 양성 판정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새 환자는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의사는 단지 당신이 HIV 양성 판정자라는 이유로 치료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치과 의원, 의원 및 그 외 의료 사무실들은 공공 편의 시설로 간주됩니다. 공공 편의 시설이 HIV 양성 판정도 포함되는 장애를 이유로, 한 개인이 공공 편의 시설의 혜택 및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당신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지 3년 되었고, 그동안 항상 긍정적인 평가 및 급여 인상을 받아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상사에게 자신이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는데, 그런 다음부터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정직 처분까지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자신이 HIV 양성 판정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고용주의 인사팀에 보고합니다. 2주 후, 여러분은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위법일까요?

뉴욕주 인권법은 고용주가 차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상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본 분과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집주인에게 자신이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다음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HIV 양성 판정 사실에 대해 집주인이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것이 위법일까요?

**HIV** 양성 판정 사실을 이유로 주택과 관련해 괴롭힘 및 기타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여러분은 집주인을 상대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ANDREW M. CUOMO, GOVERNOR

ONE FORDHAM PLAZA  
BRONX, NEW YORK 10458  
(718)741-8400

[WWW.DHR.NY.GOV](http://WWW.DHR.NY.GOV)

# HIV/AIDS 감염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까?

HIV 양성 판명자, 또는 AIDS 감염자들은 뉴욕주 인권법의 장애 조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 장애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인권법은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체 기능의 발휘를 막는 또는 의료적으로 인정되는 진단 기법을 통해 입증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의료적 결함,

그러한 결함의 기록,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결함으로 간주되는 상태.”

영구 및 일시적 장애 모두 법으로 보호됩니다.

## 법이 보호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인권법은 고용, 주택, 공공 편의 시설, 신용 거래, 특정 비종파 교육 기관 등과 관련, HIV 양성인 사람 또는 AIDS 감염자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권법은 또한 고용주 및 집주인이 차별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뉴욕주 인권법은 장애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연방법인 장애 미국인법 보다 뉴욕주 인권법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HIV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AIDS로 앓고 있는 많은 뉴욕인들의 경우 뉴욕주 인권법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유일한 법이기도 합니다.

장애 미국인법(ADA)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요 일상 활동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 인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정상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의료적으로 인정된 테스트에 의해 감지가 가능하기만 하면 장애로 인정됩니다. 또, ADA와는 달리, 뉴욕주 인권법에서는 대부분의 일시적 장애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편의"라는 표현이 훨씬 폭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에 따라 HIV 또는 AIDS 관련 질병을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수용해야 하는 정도의 폭이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뉴욕주 인권법은 주택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층 더 폭넓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HIV 양성 판명자 또는 AIDS 보유자로 관련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집주인이 "애완 동물 금지" 방침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장애에 대해 정당한 편의로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집에 동반/동거 동물 키울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직장에서...

고용주에게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편의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의료 기록 문서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장애에 대한 공지를 하고 고용주에게 편의 제공 여부 결정을 위한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주는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는 경우가 됨을 숙지하십시오.

합리적인 편의의 예:

- 수정된 업무 일정,
- 필수 직무가 아닌 일을 재 배치,
- 장비 구입 또는 개조,
-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업무 공간 제공.